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달평가위원단 운영 근거 마련〉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95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조달평가위원단 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및 제34조제3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승래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0.

다. 회 부 일 : 2025. 10.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은 2021년 기존 소프트웨어사업 등 14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하던 평가위원들을 하나의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고,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건수 증가, 평가위원단 규모 확대, 평가 대행 등 평가위원의 업무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각종 입찰 비리 문제로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중요해짐에도 평가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하여 비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민간인 수준의 처벌만 가능하여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 등 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34조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조달평가위원단 운영 근거 마련

(안 제10조의2 및 제34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 별치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34)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1.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조달청장으로부터 시설관리 등을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u><신설></u>	○ 조달평가위원단 운영 근거 마련 - 조달청장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이행에 대한 평가, 심사 및 심의 등을 위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평가위원단의 평가위원은 다음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심사 2.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정 심사 3.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라 별도의 계약방식 또는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계약의 제안서 평가 등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물등의 설계공모 심사 5.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6.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선정과정의 기술인 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심의 7. 그 밖에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 중 이 조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별치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제10조의2에 따른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u>

조달청은 조달청훈령인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이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와 심사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해당 훈령에 따르면 조달청 평가위원은 업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¹⁾이 선발하며, 임기는 선발일로부터 2년 임.²⁾ 선발된 평가위원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등 조달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심사,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등 계약 관련 심사 등을 수행함.³⁾

1) 조달청 공정관리팀장

2)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7조(평가위원 선발) ①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9조(평가위원 자격)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람으로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6급 승진·임용 후 5년 이상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산업계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 지정·공고하는 기관 및 산업계에 재직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가. 해당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삭제)

다. (삭제)

라. 해당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및 조달청장이 별도 지정·공고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해당 직무 관련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바. 조달청장이 별도 지정·공고하는 국가전문자격을 관련법에 따라 취득한 후 해당직무에서 3년 또는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다만, 조교수는 임용 이후 해당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명예교수, 산학중점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평가위원 임기) ① 평가위원의 임기는 선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은 자격요건, 사후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해당 훈령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상 뇌물죄⁴⁾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⁵⁾

그런데 공공조달 확대에 따라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와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훈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조달청 평가위원은 2022년 5,348명, 2023년 7,347명, 2024년 10,099명

-
- 3)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평가, 심사 및 심의에 적용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심사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용역 입찰에서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물품·일반용역 제안서 평가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 및 제59조의2제4항의 심의 등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인 평가
 7. 그 밖에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 심사, 심의 중 이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5)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나라장터에서 심사·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 또한 2022년 20,288건, 2023년 22,941건, 2024년 24,894건으로 증가 추세임.

이에 개정안은 조달평가위원단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조달평가위원단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동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심사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은 매년 증가 추세로, 체계적인 평가와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현행 평가위원단이 ‘수요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 및 계약의 체결·이행에 대한 평가⁶⁾’와 혁신제품 지정 등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평가⁷⁾’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달평가위원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조달청은 입법체계 상 평가 실시의 주체는 평가위원이 아닌 조달청장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조문 체계에 맞게 ‘혁신제품 지정

6)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공사등의 계약 추진 관련 심의·평가, 수행자(사업자) 선정 등(조달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7) 우수조달물품·우수조달공동상표·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혁신제품 지정 심의 대상 선정 등(조달사업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심사'를 평가 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만, 개정안은 조달평가위원단의 업무 범위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이행에 대한 평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를 수요기관에서 집행하는 계약에 대한 평가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은 수요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직접 계약을 체결(자체조달)하는 대신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중앙조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계약에 대해서도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⁸⁾.

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3.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이에 따라 현재 조달청 평가위원이 실시하는 평가·심사 중에는 조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계약에 관한 건이 아닌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⁹⁾ 평가위원단의 평가 범위를 수요기관에서 집행하는 계약에 대한 평가까지로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평가 실시의 주체를 평가위원으로 규정¹⁰⁾하고 있는데, 입법 체계상 대외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행정청인 조달청장임. 따라서 평가 운영 및 관리의 실질적 주체가 위원단이 아닌 조달청임을 고려할 때, 대외적 책임 주체를 ‘조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으로서 제2차 이후 계약인 것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9) 2024년 기준 심사·평가 기반의 계약 24,894건 중 32.5%(8,091건)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한 중앙조달에 해당하며, 이 중 4,609건은 수요기관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3,482건은 조달청 평가위원단이 평가를 실시하였음.

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의2(조달평가위원단)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0조의2(조달평가위원단)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이행에 대한 평가, 심사 및 심의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을 위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단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심사 2. 제28조에 따른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지정 심사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계약방식 또는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계약의 제안서 평가 등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설계 공모 심사 5.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6.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선정과정

현행	개정안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략) <신설>	의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심의 7. 그 밖에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 중 이 조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평가위원단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해촉 및 평가위원 사후평가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2에 따른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

문의처

02)6788-5152